

**Vol. 11**

2024.11. 12.

# Customs & Trade News

HANJOO CERTIFIED CUSTOMS AGENCY



HANJOO

T. 02-2017-2140

F. 02-545-1682

W. <http://www.hjcustoms.co.kr>

통관사업1본부 안만복본부장 mbahn@hjcustoms.co.kr

통관사업2본부 박주경본부장 jpark@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장진명본부장 jmjang@hjcustoms.co.kr

통관사업3본부 김민혁전임 mhkim@hjcustoms.co.kr

## CONTENTS

- I. 법령 개정사항
- II. 입안 예고
- III. 조세심판사례
-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 V. 관세 및 FTA관련 동향

I. 법령 개정사항

1.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고시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및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구체화 등 고시 운영사항 보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시 적용범위 명확화 (제1조)	보세창고의 특경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고시의 제명을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로 개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보세창고의 특허와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확화
‘정부기간 등’의 범위 구체화 (제3조 등)	‘정부기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명확화
외국인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인방법 명확화 (제5조)	외국인 운영인에 대한 「관세법」 제175조 적용 관련,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유권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서류로 본국법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도록 명시
보세창고 특허요건 완화 (제6조, 제12조의2)	임차시설의 경우 특허기간을 임대차 기간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신청인이 소유하는 시설의 경우와 같이 10년 이내로 특허할 수 있도록 완화 자가용 보세창고에만 허용하던 공동보세구역 제도를 영업용 보세창고로 확대
영업용 보세창고의 고내면적 기준 명확화 (제10조)	창고면적은 창고 내 화물을 장치하는 바닥의 면적으로 하도록 기준 명확화
특허수수료 납부고 지서 교부 기간 명확화 (제7조)	세관장에게 매분기 마지막 월 10일까지 특허수수료 납부고지서를 교부토록 명시

(3) 시행일

‘24.09.30.

I. 법령 개정사항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에 따라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안보관리원은 무역안보 홍보·컨설팅 및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등을 하도록 하며, 수출허가 등의 면제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5백만원, 2회 위반 시 7백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국제수출통제체제 (제32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 (제32조의2)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에서 수출허가, 상황허가, 환적허가 중개허가를 받은 물품등의 설치, 운용, 점검, 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은 제외함.																			
허가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교육 (제48조)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무역안보관리원’으로 변경																			
무역안보관리원의 업무 (제46조)	-무역안보 홍보 및 컨설팅 업무 -무역제한 특별조치 이행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지원 업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등급 결정·조정 및 지정 취소 등에 대한 지원 업무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 지원 업무 -무역안보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위반행위</th> <th colspan="3">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th> </tr> <tr> <th>1차 위반</th> <th>2차 위반</th> <th>3차 위반</th> </tr> </thead> <tbody> <tr> <td>허가면제 사유의 입증서류 미제출</td> <td>500</td> <td>700</td> <td>1,000</td> </tr> <tr> <td>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한 경우 등</td> <td>500</td> <td>700</td> <td>1,000</td> </tr> <tr> <td>자료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td> <td>1,000</td> <td>1,500</td> <td>2,000</td> </tr> </tbody> </table>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허가면제 사유의 입증서류 미제출	500	700	1,000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한 경우 등	500	700	1,000	자료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	1,000	1,500	2,000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허가면제 사유의 입증서류 미제출	500	700	1,000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자가판정한 경우 등	500	700	1,000																	
자료 미제출 및 거짓으로 제출	1,000	1,500	2,000																	

(3) 시행일

’24.10.08.

I. 법령 개정사항

3. 「화학물질등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제11조)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 (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1조)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함.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3) 시행일

'24.10.10.

I. 법령 개정사항

4. 「화학물질등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면제 확인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제조를 위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등의 허가증 및 재활용 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등록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작성방법을 정하고, 해당 면제 확인을 최초 1 회만 받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위하여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5조)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영 제13조제5호)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인 경우 (영제13조제6호의2)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3) 시행일

'24.10.10.

I. 법령 개정사항

5. 「약사법」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이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 실태 파악 등을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의 재위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원위탁자인 의약품공급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는 한편,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의약품외품의 불법 거래가 지속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의약품 등 불법 판매·광고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제21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품외품을 판매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의 취소 및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함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승인 등 (제34조의6)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제46조의 2)	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규정함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6조의3)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그 종사자가 의약품의 판매질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제47조)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위탁한 의약품공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 보고서 제출 등 (제47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재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5년간 각각 보관하도록 함
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 (제61조의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의약품 불법판매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율규제 (제67조의2)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 유통 등의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하는 사단법인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3조의 8)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제83조의 9)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등의 불법판매의 알선·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벌칙 (제94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벌칙 (제95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에 관한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24.10.19.

I. 법령 개정사항

6.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약품 판촉영업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차 위반 시 30 만원, 2 차 위반 시 45 만원, 3 차 이상 위반 시 70 만원,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차 위반 시 50 만원, 2 차 위반 시 75 만원, 3 차 이상 위반 시 100 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고발을 제고를 위하여 위반사실 신고·고발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해당 사건에 선고·부과된 벌금·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포상금의 지급절차 (제37조)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개정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	45	70
	휴업·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75	100

(3) 시행일

'24.10.19.

I. 법령 개정사항

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1) 개정 이유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 방법 및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을 정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약품 판촉영업자 등에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 (제43조의2)	<p>“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기준을 말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li> <li>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li> </ol> <p>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li> <li>2.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li> <li>3.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li> <li>4.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li> </ol>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제43조의5)	<p>의약품 판촉영업자는 다음의 교육을 받아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신규교육: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li> <li>2. 보수교육: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li> </ol>

<p>지출보고관리시스템 의 구축 및 운영 (제44조의4)</p>	<p>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공공기관에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p>
<p>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 (제44조의5)</p>	<p>의약품 공급자는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촉진 업무를 다른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명</li> <li>2.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li> <li>3. 위탁 의약품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촉진업무의 위탁 내용</li> <li>4.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li> <li>5.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li> </ol>

(3) 시행일

'24.10.19.

II. 입안예고

1.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입안 계획

(1) 입안 이유

해양수산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세청장이 원산지(포괄) 확인서로 인정하는 품목 및 서류 확대 및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2022)을 반영한 품목번호 정비\*\* 및 인증서류 발급근거 개정에 따른 인증서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원산지(포괄)확인서로 인정되는 신규 품목 및 서류의 확대	<b>(인정품목) 품목 20개 신규 지정 별표 1·2·3·5 개정</b>			
	구분	품목		
	별표1(농산물)	냉동애플망고, 신선새싹삼 등 2개 품목		
	별표2(수산물)	활넙치, 활전복, 김(건조) 등 16개 품목		
	별표3(축산물)	천연꿀 1개 품목		
별표5(지역특산물)	냉동삼치 1개 품목			
HS 품목번호 및 용어정비	<b>(인정서류) 서류 2종 신규 지정</b>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서식
	수산물	수산물 수출통합브랜드 (K-FISH)사용승인서	사단법인 한국수산회	서식20
	축산물	축산물(꿀)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물품질평가원	서식21
	<b>(HS 품목분류 정비) 별표의 HS번호를 HS협약에 따른 품목분류 기준 개정(HS 2022)을 반영하여 정비</b>			
구분	해당연번			
별표1(농산물)	No. 3·9·91·146·187·196·290·293·339 등 21개			
별표2(수산물)	No. 3·6·12·17·21·42·48·55·58·61·65·76 등 12개			
<b>(용어 정비) 별표의 품목명, HS번호 오류 등 정비</b>				
구분	해당연번			
별표1(농산물)	No. 111·366·881 등 3개			
별표2(수산물)	No. 13·29·41·56·63·70·72 등 7개			
별표3(축산물)	No. 1·2·3·4·5 등 5개			
별표4(식품류)	No. 30 등 1개			
별표5(지역특산물)	No. 6·14·15·27·45 등 5개			

(3) 시행 일자

'24. 11.01. 시행

### Ⅲ. 조세심판사례

## 1. 쟁점물품(TUBE-CONNECTING)을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 8415.90-0000 호와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1) 주요내용

- 가. 청구법인은 2019.4.1.부터 2019.5.31.까지 중국 소재 000(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000 호 등 16 건으로 TUBE-CONNECTING(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 8415.90-0000 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 (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 하였음.
- 나. 처분청(광양세관장)은 2023.4.20. 수입신고번호 000 호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부산세관 분석실에 수입신고수리 후 분석을 의뢰하였고, 부산세관 분석실은 2023.7.4. 쟁점물품이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이 분류되는 HSK 제 7608.10-0000 호 (FCN1 3.2~5.8%)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보하여, 처분청(광양세관장)은 이를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음.
- 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HSK 제 7608.10-0000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2.23. 처분청 광양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7건에 대하여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처분청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000호 등 9건에 대하여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수정신고·납부하였음.
- 라.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제 8415.90-0000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2.27. 처분청 광양세관장에게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2024.3.28. 처분청 인천세관장에게 관세 000원, 부가가치세 000원 및 가산세 000원 합계 000원을 각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4. 및 2024.4.23. 이를 각각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한다)하였음.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였음.

## (2)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수입 후 추가공정을 통해서 완성제품으로 만들어져 수입된 상태 그대로는 공기조절기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합금되지 않은 알루미늄관이 최대중량을 가지는 반면 고주파 접합 용접된 부분은 미소한 부분에 불과하여 알루미늄 관에 본질적 특성이 있음.

## (3) 결정일

2024.09.05. (조심 2024 관 008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1. 탄소나노튜브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C; R.KOREA ② Artificial graphite; K-Nanos-100P; R.KOREA
물품 설명	촉매에 탄화수소 가스를 공급·합성하여 제조한 나노입자의 흑색 미세분말(탄소나노튜브)
HS CODE	- 변경 전 : 제 3801.10-9000 호 (협정 관세 6.5%) - 변경 후 : 제 2803.00-9090 호 (협정 관세 5.5%)
변경 사유	탄소나노튜브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이므로 제 2803.00- 9090 호에 분류 (2024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2. Chrome ore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Refractory chromite
물품 설명	흑회색의 불규칙한 럽프상의 크롬광
HS CODE	- 변경 전 : 제 2530.90-9099 호 (기본 관세: 3%) - 변경 후 : 제 2610.00-0000 호 (기본 관세: 0%)
변경 사유	금속채취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야금공업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광물학상 광물에 해당하므로 제 2610.00-0000 호에 분류 (2024년 제 4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3. Microscopes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Aperio VERSA Scanning System; ② 고배율 현미경; L200ND
물품 설명	디지털 카메라가 장착된 광학현미경
HS CODE	- 변경 전 : 제 9011.20-109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① 제 9011.80-4000 호 (협정 관세 0%) ② 제 9011.80-9000 호 (협정 관세 0%)
변경 사유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이 아닌 그 밖의 광학현미경이므로 ① 제 9011.80-4000 호, ② 제 9011.80-9000 호에 분류(2024년 제 4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4.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optical film; TUV88
물품 설명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에 자외선 흡수제를 소량 혼합한 필름
HS CODE	- 변경 전 : 제 9001.90-9000 호 (협정 관세 0%) - 변경 후 : 제 3920.62-0000 호 (협정 관세 6.5%) *중국, 인도,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 연합 덤핑방지관세 有
변경 사유	광학소자가 아닌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제 3920.62-0000 호에 분류 (2024년 제 4 회 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5. Ma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MAT; S-1; 65X170 ② QUILT-화원(FLOWEPOT) (70cm×160cm) ③ QUILT - GRACE(70cm×160cm)
물품 설명	소파 위에 까는 방직용섬유제 매트
HS CODE	- 변경 전 : 제 9404.90-000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①~② 제 6304.92-0000 호 (기본 관세 13%) ③ 제 6304.93-0000 호 (기본 관세 13%)
변경 사유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실내용품이므로 ①~② 제 6304. 92-000 호, ③ 제 6304.93-000 호에 분류 (2024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6. Solder resist 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Other ink; SOLDER RESISTOR & HARDENER; PSR-4000 AUS308 & CA-40 AUS308; JAPAN
물품 설명	인쇄회로기판의 회로보호와 절연을 위해 Screen mask 를 이용한 인쇄공정에 사용하는 Photosensitive Solder resist
HS CODE	- 변경 전 : 제 3215.90-9000 호 (협정 관세 6.5%) - 변경 후 : 제 3707.90-9900 호 (기본 관세 0%)
변경 사유	감광성 플라스틱 수지용액인 사진용 화학조제품이므로 3707.90- 9900 호에 분류 (2024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7.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JABRA SPEAK ; JABRA EVOLVE2 65 STEREO UC BLACK ; ②Bluetooth Earphone ; COWON CF2 ; 블루투스이어폰, 전용충전크래들(5V, 1A) ③Bluetooth Earphone ; COWON CT5 ; 블루투스 V5.0 이어폰, 충전크래들 ④Bluetooth Headset ; Wireless Over ear Headphone ; MW50 ⑤HEADPHONES; PF560141BA
물품 설명	마이크가 내장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
HS CODE	- 변경 전 : 제 8517.62-6090 호 (협정 관세 0%) - 변경 후 : 제 8518.30-9000 호 (협정 관세 4%)
변경 사유	오디오 파일 재생을 제어하고 호스트 장치에 전화 받거나, 거절 또는 끊기를 지시하는 기능이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가 내장된 것으로 제 16부 주 제 3호에 따라 제 8518.30-9000 호에 분류 (WCO 제 73 차 HS 위원회 승인 HS 분류의견서('24.3 월) 및 2024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IV. 품목분류 변경고시

8. 산타클로스 축제용품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구분	내용
품명	① Standing figure 150cm (Plastic decoration) ② 스노우볼(WATER GLOBE) [모델명 : 913182(A) 산타클로스]
물품 설명	산타클로스 형상의 축제용품
HS CODE	- 변경 전 : ① 제 3926.40-0000 호 (협정 관세 6.5%) ② 제 7013.99-0000 호 (기본 관세 8%) - 변경 후 : 제 9505.10-0000 호 (기본 관세 8%)
변경 사유	산타클로스 형상의 크리스마스 축제용품이므로 제 9505.10-0000 호에 분류(WCO 제 73 차 HS 위원회 승인 HS 분류의견서(24.3 월) 및 2024 년 제 4 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시행일

'24.10.14.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1.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 미국 압출연합 및 철강노조는 지난 '23.10월 한국산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대해 반덤핑 제소

\* 한국, 중국, 콜롬비아,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대만, 태국, 터키, UAE, 베트남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미 상무부는 한국기업에 대해 알백 0%, 신양 및 여타 기업 3.13%, 미응답 7개사에 43.56% 덤핑율 부과 ('22년 대미 수출현황 : 9,839천톤/ 68백만불, 상무부 자료 기준)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간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2. '24년 3분기 화장품 수출 74억 달러..역대 최대

- 수출액이 가장 컸던 '21.3분기 보다 8.8% 늘어...미국 수출 약 40% 증가
- K뷰티 제품의 수출경쟁력 확보, 세계 시장 진출 위해 적극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2024년 3분기 수출 규모가 74억 달러로, 전년 동기 수출액인 62억 달러 대비 19.3%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2024년 3분기까지 수출액은 역대 연간 수출액이 가장 컸던 '21년의 3분기까지 수출액인 68억 달러보다도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3분기) 68억 달러 → ('22.3분기) 60억 달러(-11.8%)  
→ ('23.3분기) 62억 달러(+3.3%) → ('24.3분기) 74억 달러(+19.3%)

\*\* 역대 연간 최대 수출액 : '21년 92억 달러

< 국가별 수출은 3분기도 중국이 1위, 증가폭은 미국이 가장 많아 >

'24년 3분기까지 주요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이 20.2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14.3억 달러, 일본 7.4억 달러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수출액 증감을 보면 중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0억 달러 감소(-9.1%), 미국은 5.5억 달러 증가(+38.6%), 일본은 1.3억 달러 증가(+18.2%) 하였으며, 미국 수출액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 기초화장품 수출이 가장 많고, 인체세정용품 증가폭이 가장 커 >

제품 유형별 수출액은 기초화장품 55.6억 달러(+8.2억 달러, +17.3%), 색조 화장품 9.8억 달러(+2.0억 달러, +26.6%), 인체세정용품 3.4억 달러(+1.0억 달러, +40.7%) 순으로, 인체세정용품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중국은 유형별로 대부분 수출이 감소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출 감소액은 3.0억 달러(16.6억 달러→13.6억 달러, -18.3%)로 감소액이 가장 컸다.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는 1.0억 달러(2.3억 달러→3.3억 달러, +3.1%), 색조화장용 제품류는 0.2억 달러(2.2억 달러→2.4억 달러, +10.3%)로 수출이 증가했다.

미국은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하였고, 특히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4.6억 달러(6.0억 달러→10.6억 달러, +77.3%), 인체세정용 제품류 0.4억 달러(0.2억 달러→0.6억 달러, +150.6%), 색조화장품 제품류 0.3억 달러(1.6억 달러→1.9억 달러, +17.2%)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일본도 기초화장용 제품류가 0.9억 달러(3.5억 달러→4.4억 달러, +27.4%), 색조화장품 제품류가 0.3억 달러(1.8억 달러→2.1억 달러, +19%), 인체세정용 제품류에서 0.1억 달러(0.1억 달러→0.2억 달러, +106%) 순으로 대부분 유형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 < 우리 화장품 해외 진출을 위한 식약처의 지원 >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 주요 수출국과 규제 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화장품의 해외 진출을 돕고, 수출 다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국가의 해외 규제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규제 당국자와 산업계가 참여하여 최신 기술을 공유하고 화장품 규제 조화와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원아시아 뷰티 포럼'을 오는 10월 17일(목)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국, 중국 등에서 안전성 평가제를 시행함에 따라,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도 안전성 평가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우수한 국산 화장품이 세계 시장으로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3.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을 위한 기업 의견 수렴

-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고시 개정안 및 조사신청서 기업에 공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장관 안덕근)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해 10월 15일(화) 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하였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무역위원회 고시)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 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하여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무역위원회,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23.12월~'24.3월)하여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 ①관세법 : 우회덤핑방지관세 부과 근거, ②시행령 : 우회덤핑 유형·조사신청·조사절차(직권조사 규정 신설, 기존 원심 대비 조사기간 최대 4개월 단축), ③시행규칙 : 우회덤핑 판정 고려요소 등

이번 회의에서는 ❶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 의견을 제시한 자'로 우회덤핑 조사신청 자격 규정, ❷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❸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❹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을 소개하였다.

또한, 미국·유럽연합(EU)·호주·인도 등 해외사례를 참고하되 신속한 우회덤핑 조사를 위해 기존 덤핑조사(원심) 신청에 비해 작성사항을 간소화한 우회덤핑 조사신청서 초안을 공개하고 기업, 협·단체, 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무역위 이재형 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년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하여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 4. 무역위원회, 중국산 PET 수지 덤프 판정

- 향후 5년간 7.00 ~ 7.98 % 덤프방지관세 부과 건의
-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은 잠정조치 3.66 ~ 11.37% 부과 건의
-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비침해 판정
-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 공청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17일(목) 제453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중국산 PET 수지(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덤프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중국산 PET 수지에 대해 향후 5년간 7.00 ~ 7.98%의 덤프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의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서 덤프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잠정덤핑방지관세 3.66 ~ 11.37% 부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국내기업인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A를 상대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조사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정하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 제품의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하였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OPP 필름(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반덤핑조사 국내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OPP 필름 반덤핑조사는 향후 국내외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25년 2월 최종 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5. 수출,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플러스 흐름

- 중·미·아세안 3대 시장 및 신흥시장에서 견조한 수출 증가세 지속
- 통상교섭본부장, 제10차 수출지역담당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 점검을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0.28.(월) 오후 제10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24년 1~9월에는 수출이 9대 주요 지역 중 7개 지역에서 증가하였다.

\* 9대 주요 수출지역(수출액순) : <sup>(증가)</sup>중국, 미국, 아세안, 일본, 중남미, 중동, 인도, <sup>(감소)</sup>EU, CIS

대중국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345억불, +33%)를 포함한 IT품목(447억불, +28%) 수출과 석유화학(129억불, +2%)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6.8% 증가한 979억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9월에는 2월 이후 7개월 만에 대중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었다.

대미국 수출은 1·2위 품목인 자동차(265억불, +20%), 일반기계(115억불, +17%)와 반도체(73억불, +147%), 컴퓨터(36억불, +170%) 등 IT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9월 누계 기준 951억불(+14.0%)을 기록하였다.

또한 대아세안 수출(846억불, +6.6%)도 반도체(200억불,+25%) 등 IT 품목(319억불,+17%)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석유제품(124억불,+10%)·석유화학(50억불,+22%)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중남미(220억불, +17%), 중동(146억불, +3%), 인도(141억불, +6%) 등 신흥시장과 일본(221억불, +3%)으로의 수출도 증가하였다. 한편 우리 4대 수출시장인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8월 플러스로 전환되어 2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선박(1~9월 56억불, +98%), 바이오헬스(36억불, +37%) 수출이 호실적을 이어갔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 수출이 중동 분쟁, 러-우 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견조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주력시장과 신흥시장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4분기에도 수출 플러스가 기대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V. 관세 및 FTA 관련 동향

**6.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 배출량 산정 실습으로 국내기업 대응 역량 높여**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지원을 위한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 개최
- 기업관계자 180여명 참여, 제품별 배출량 산정, 국내기업 대응 우수사례 공유

정부가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실습 과정을 통해 산업계의 탄소무역규제 대응 역량을 높인다.

\* 유럽연합 수입업자는 역외 수출기업의 협조를 받아 수입제품별(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유럽 연합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정부는 10월 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광주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관계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제4차 정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국내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올해 4월부터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에서 개최했다.

이번 제4차 설명회에서는 유럽연합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관계자 약 180여명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주요 동향 소개, △수출신고 프로그램을 통한 탄소국경조정제도 품목 확인 및 유의 사항 안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 설명,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템플릿) 작성 실습,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국내기업 우수사례와 정부의 지원사업 소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창구(헬프데스크, ☎1551-3213)에 접수된 주요 질의를 소개하고, 설명회 참석자가 직접 배출량 산정 및 통지서 작성을 수행하는 실습을 진행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공급망 실사 등 '최근의 환경. 사회. 투명 경영(ESG)'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에스지(ESG) 역량 강화 지원사업도 소개한다.

정부는 탄소무역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내년에도 △기업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는 상담창구 운영, △기업 현장 맞춤형 진단(컨설팅),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전문교육, 탄소감축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세계 시장의 탄소무역규제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세계적인 탄소규제 강화의 추세를 감안하여 탄소감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